	교원연구실적심사규정	제 정 일	1997. 6.19
		개 정 일	2016.10. 1
		개정차수	6차
		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의 교육, 연구활동의 진작과 신규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5. 8. 1, 2016.10. 1)

제 2조 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정관이 정하고 있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.

② 법령 및 기타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조 (연구실적의 범위) ①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 적용하는 연구실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7.22, 2015. 8. 1, 2016.10. 1)

1. 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 논문의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.
2. 연구실적물은 아래 각 호와 같아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.

가. 저서(출판된 것에 한함)

나. 학회지

다. 논문집

라. 학술지로 공인 받은 정기간행물

마. 예 · 체능계에 있어서는 창작, 발표, 전시, 입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.

제 4조 (연구실적의 인정) 연구실적물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저서 중 저자의 이론을 정리 체계화한 저서
2. 초 · 중 · 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(개정 2013. 3. 1)
3. 전문대학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 정리한 교재
4. 예 · 체능계 전공은 교수업적평가 세부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6.10. 1)
5.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신규임용 전에 취득한 학위논문 (개정 2016.10. 1)
6. (삭제 2016.10. 1)
7. (삭제 2016.10. 1)
8. (삭제 2016.10. 1)

제 5조 (삭제 2016.10. 1)

제 6조 (연구실적 심사) ①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전공분야 교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타 대학 교원을 1인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12. 7.22, 2015. 8. 1, 2016.10. 1)

② 심사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심사 대상자 보다 상위의 직위자로 한다. (개정 2009. 2.13)

③ (삭제 2016.10. 1)

④ 타 대학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 동일한 대학에서 1인을 초과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.

⑤ 타 대학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의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심사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한다.

⑥ (삭제 2016.10. 1)

⑦ (삭제 2013. 3. 1)

제 7조 (연구실적물의 환산율)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 환산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1인 연구 또는 편찬 : 100%
2.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70%
3.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50%
4. 4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30%
5. 석사학위 취득 논문 : 100%
6. 박사학위 취득 논문 : 100% (개정 2016.10. 1)

다만,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중 2인(지도교수 포함) 공동명의로 발표할 경우에는 학위 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7. 예·체능계 실기의 경우 본교 '교수업적평가 세부기준'에 준하여 인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